

현안연구 2011-5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경제파급효과 분석 및 신규재원 발굴

신 동 일

제주관광진흥기금의 효과와 새로운 자원마련

2008년 3단계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관광3법이 일괄이양되면서 과거 중앙 정부에 의해 운용되었던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제주관광진흥기금의 형태로 제주 특별자치도가 독자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가 국가단위 관광개발의 한계를 벗어나 스스로 차별화된 관광산업 육성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일이다. 실제로 관광진흥기금 운용 이후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지원정책들을 발굴해내며 제주도는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향후에도 차별화된 정책과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가 관건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카지노납부금과 출국 납부금에 의존한 관광진흥기금은 카지노 경영 악화와 제주기점 출국 동향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되고, 기금 확보에 한계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기금의 독자적인 운용뿐만 아니라 기금 확보 측면에서도 타 지역과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제주지역의 많은 사업체들은 직·간접적으로 관광산업의 발전에 영향과 혜택을 누리고 산다. 혜택을 받은 만큼 지역사회 발전에 환원하는 방법 마련은 당연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고, 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아무썸튼 본 연구가 업계, 정책당국, 그 외 관련자 모두가 제주관광의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고, 제시된 정책 대안들이 제주관광의 성숙을 위한 대안으로서 활용되기를 바란다.

2011년 10월

제 주 발 전 연 구 원
원 장 양 영 오

연구 요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운용·관리 조례’ 제2조에 의하면 기금의 조성은 특별법 제17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및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출국납부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도록 하고 있음.
- 관광산업의 발달로 혜택을 입는 관광사업체가 카지노사업 뿐만이 아닌 상황에서 향후에도 기금조성에 카지노 사업자만이 부담해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운용 현황 분석을 통해 제주 지역에서의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기금 확충을 위한 신규 자원 발굴 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있음.

2. 제주관광진흥기금 현황 분석

-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제주지역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 관련 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관광산업 발전 및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 크게는 보조사업과 사업체들의 융자자금에 대한 이차차액을 지원해 주는 융자사업의 방식으로 운용됨.

<표 1>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현황(2010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월	수 입 액					지 출 액			조성액 (누계)
		계	카지노 납부금	출 국 납부금	이자 수입	주민기금 전입금	계	이차 보전	보 조 사업등	
2010	24,592	10,473	5,637	3,510	1,326		4,291	3,363	928	30,774

주) 2010년말 채권(1,088백만원)제외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과

3. 관광세 사례조사

- 2002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세의 하나인 숙박세는 도쿄도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하여 숙박요금 외에 별도의 숙박세를 징수하여 세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숙박세의 징수는 1박 요금이 1만엔 미만의 경우에는 면제되지만, 1만엔~15,000엔의 경우 1인당 1박에 100엔, 15,000엔을 초과하는 경우 200엔의 숙박세를 징수하고 있음.
- 미국은 2010년 3월부터 EASTA(미국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1인당 10달러의 관광세를 징수하고 수익의 50%를 국가홍보 예산에 편입하는 등 관광세 징수 사례가 늘고 있음. 또한 미국의 관광세 중에서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는 세목이 일본과 유사한 형태의 호텔숙박세(hotel room taxes)임. 서울은 각 주별로 상이하지만 하와이주의 경우 7.25% 등 평균 10~11% 수준임.
- 이탈리아는 2011년 1월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세를 징수하고 있음. 이탈리아는 2010년 7월28일 로마시의회에서 승인된 관광서비스에 대한 숙박세 도입 적용을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는데, 이에 따라 로마 시내에서 숙박을 하는 모든 외래관광객은 투숙호텔에 관광세를 지불해야 함.

<표 2> 각국의 관광관련세의 종류

국가	관광관련세의 세목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페루 멕시코 스웨덴, 캐나다 호주, 홍콩, 인도 아일랜드, 콜롬비아 일본 미국 싱가포르 필리핀 도미니카 공화국 사이판	체제세 특별요양세, 숙박세(로마) 관광인제세, 공항세 천연자원개발세, 입장세 삼림세 입장세 관광세 골프장이용세, 입탕세, 숙박세(도쿄) 호텔숙박세, 관광오락세, 식음료수세 관광진흥세 공항세 여행자카드세, 출국세 관광진흥세

4.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 2010년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분석은 직접효과(자기지역 파급효과)와 간접효과(타지역 파급효과)를 구분하고, 다시 이를 합산한 총 파급효과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분석되어졌음.
- 한편, 기금의 지역경제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2010년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72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74억원, 취업유발효과는 2,190명으로 나타났음.

<표 3>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지역경제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명)

	2010년 기준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기금 지원	53,983	20,675	501
대응 투자	118,634	46,752	1,689
합계	172,617	67,427	2,190

<표 4> 제주지역 주요 분야와의 파급효과 분석비교

구 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스포츠대회	2,437억원	1,274억원	-
제주관광진흥기금	1,726억원	674억원	2,190명
전지훈련	1,124억원	569억원	-

주 1) 스포츠대회, 전지훈련의 경제파급효과 결과는 2009년 기준으로 제주발전연구원, 2009 스포츠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2010. 2.에서 인용함.

주 2) 취업유발효과 비교와 관련 스포츠대회, 전지훈련의 경우는 고용유발효과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방법이 다른 이유로 단순비교가 불가능함.

5. 신규재원 발굴

1) 신규재원 발굴의 기본방향

(1)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우선

- 기금조성의 기본원칙은 수익자부담 원칙이라 할 수 있음.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경우도 기금운용의 혜택과 제주관광 성장에 따른 상대적 이익을 가장 많이 얻는 기관과 사업체들의 부담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

(2)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방안

- 일본과 미국, 여타 많은 선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호텔 숙박세는 다른 조세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을 내포하고 있었음. 징수가 간편하여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지역주민이 아닌 관광객들의 자발적인 관광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을 방지할 수 있음.

2) 신규재원 발굴 방안

(1) 내·외국인면세점에 기금 징수

-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시내 내국인면세점도 제주관광 성장의 수혜를 입는 대표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음.
- JDC의 경우 지난 2003년 약 254억원의 순이익을 거둔 이후 이익창출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0년에는 약 796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였으나 관광진흥기금에의 공헌은 전혀 없는 실정임.
- 제주관광공사의 경우는 면세점의 입지적 불리함으로 JDC 보다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지난 2009년 개장 이후 2010년에는 약42억원의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 JDC의 면세점 매출 및 수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매출액	100,036	116,892	153,454	181,566	195,443	232,703	270,644	302,562
순이익	25,454	32,226	46,124	53,893	55,334	71,162	74,808	79,608

<표 6> 제주관광공사의 면세점 매출 및 수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6월	비고
매출액	19,770	35,469	19,727	2009.3.30 개장
순이익	1,084	4,224	2,235	

- 제주도내 보세판매장(롯데와 신라 등 외국인면세점)의 매출액은 제주세관에 공식통계에 의하면 2010년 기준 1,5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7> 제주지역 보세판매장(롯데,신라면세점) 매출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매출액	724	696	880	1,265	1,534

자료 : 제주세관

- 관광진흥기금 징수비율은 보다 면밀하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시행 초기에는 사업체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카지노납부금 징수비율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함.
- 이 경우 제주관광의 성장세를 고려할 때 JDC와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내국인면세점과 롯데, 신라에서 운영하는 외국인면세점 등에서 확충할 수 있는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규모는 매년 최소 60억원 이상으로 분석됨.

<표 8> 면세점에서의 기금확충 예상액(2010년 매출액 기준)

구분	JDC	제주관광공사	보세판매장 (롯데, 신라)	합계
기금확충 예상액	33억 6천만원	7억 1천만원	17억 9천만원	58억 6천만원

자료 : 연구자 추정 분석

- 다만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매출액이 2010년 기준으로 총 3조 7,700억에 이른다는 발표를 살펴볼 때 제주지역의 매출액이 1,534억원(0.4%)에 머문다는 것은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제주지역 면세점만의 공식 매출액을 제주세관 자료 이외에는 획득하기가 어려웠음을 밝혀둠.

□ 참고 : 2010년 국내면세점 매출액

2010년 롯데면세점은 제주, 소공본점, 잠실점, 제주공항, 인천공항 등의 경로를 통해 2010년 총매출액이 2조 3,200억원에 이르고 있음.¹⁾

신라면세점의 경우도 2010년 총매출액이 1조 4,500억원에 이르고 있음.

- 현행 제주도특별법 제172조에 의하면 관광진흥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카지노세, 출국납부금 3가지로 한정되어 있기에 면세점에서 관광진흥기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향후 특별법 개정이 필요함.

특별법 개정 조항(안)

제172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2. 제171조의7제3항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내에서 면세 및 보세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제주자치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조항 추가)

1) 매일경제, 2011.7.22, 기사 일부 인용

(2) 관광호텔숙박세를 통한 기금확대

- 타 국가의 숙박세와는 달리 제주지역 관광호텔숙박세는 일반 세입 예산이 아닌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조성하여 내도 내·외국인관광객들의 관광만족도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예산으로 활용함.
- 제주지역 숙박세 도입대상은 우선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에 한정 도입하고, 향후 도내 여타 숙박업체들의 경영여건과 관광환경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감.
- 또한, 외국의 경우는 10세~13세 미만인 경우만 면제되지만, 제주의 경우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숙박세와 20인 이상 단체의 숙박세를 면제 대상으로 하여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은 제주관광 여건을 고려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필요함.

<표 9> 제주지역 숙박세 도입안과 타 국가 비교 분석

구분	제주도	일본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금액	1,000원	1,500원~ 3,000원	객실료의 10~11%	3,000원 ~4,500원	300원 ~2,500원
대상	투숙객	투숙객	관광객	투숙객	투숙객
면제	지역주민 18세 미만 20인 이상 단체	1만엔 이하		10세 미만 25인 이상 단체	13세 미만 단체

자료 : 연구자 재구성

<표 10> 관광숙박업에서의 기금확충 예상액

구분	특급호텔	기타 관광호텔	합계
기금확충 예상액	12억 3천만원	24억 5천만원	36억 8천만원

주1) 2010년 기준 도내 180개소 11,782실의 관광숙박업체를 기준으로 산정.

주2) 특급호텔 객실가동을 평균 80%, 일반 관광호텔 60% 산정

주3) 투숙객 중 숙박세 면제 대상자는 30% 내외로 산정.

(3) 부과(징수) 수수료의 인하 협상

- 제주도는 2009년 이후 출국납부금 징수를 한국공항공사에 위탁하는 협약 체결을 통해 협약에 따라 징수액의 5.5%를 수수료로 지출하고 있는데, 매년 약 2억원 정도임.
- 수수료는 한국공항공사(1%)와 항공사(4.5%)가 나누어 갖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공항이용에 따른 공항세를 징수하고 있고, 항공사들 역시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항공기 이용 증가로 이익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출국납부금 징수수료까지 챙기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됨.

<표 11> 출국납부금 징수와 수수료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납부금 징수	3,105	2,879	3,051	3,510	
수수료 지급	171	158	168	193	5.5% 지급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과

- 제주도는 한국공항공사와의 재협약을 통해 징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적절한 수수료율은 상호간에 협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출국납부금은 항공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징수를 위해 한국공항공사나 항공사 모두 별도의 인력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최대 2% 이하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목 차

I. 연구의 개요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3. 연구 방법	2
4. 연구 구성	3
II. 제주관광진흥기금 현황 분석	3
1. 기금의 개념과 특징	3
2.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운용 현황	4
3.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부과 현황	8
III. 관광세 관련 사례조사	10
1. 일본의 관광세	10
2. 미국의 관광세	18
3. 기타 국가의 관광세	19
4. 주요국의 카지노세	23
5. 시사점	32
IV.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33
1. 파급경로 및 분석 방법	33
2.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36
V. 신규자원 발굴	38
1. 신규자원 발굴의 기본방향	38
2. 신규자원 발굴 방안	39
<참고문헌>	46
<부록>	47

표 · 그림 목차

<표 2- 1>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현황	5
<표 2- 2> 제주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추이	6
<표 2- 3>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기준	7
<표 2- 4>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업종	7
<표 2- 5> 출국납부금 징수 및 수수료 지급 현황	8
<표 2- 6> 카지노 매출액 및 기금납부 현황	9
<표 3- 1> 후쿠시마현의 골프장이용세 사례	11
<표 3- 2> 입탕세의 개요	13
<표 3- 3> 문화관광시설세의 과세사례	14
<표 3- 4> 필리핀의 공항세 형태	22
<표 3- 5> 각국의 관광관련세의 종류	22
<표 3- 6> 미국의 카지노 사업내역	24
<표 3- 7> 미국의 상업용 카지노 재정수입 현황	26
<표 3- 8> 호주의 카지노 매출액 추이	28
<표 3- 9> 마카오의 게임 매출액 추이	31
<표 4- 1>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소비지출	36
<표 4- 2> 소비지출의 지역산업연관표 분류	36
<표 4- 3>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지역경제파급효과	37
<표 4- 4> 제주지역 주요 분야와의 파급효과 분석비교	37
<표 5- 1> JDC의 면세점 매출 및 수익현황	40
<표 5- 2> 제주관광공사의 면세점 매출 및 수익현황	40
<표 5- 3> 제주지역 보세판매장 매출 현황	40
<표 5- 4> 면세점에서의 기금확충 예상액	41
<표 5- 5> 제주지역 숙박세 도입안과 타 국가 비교분석	44
<표 5- 6> 관광숙박업에서의 기금확충 예상액	44
<표 5- 7> 출국납부금 징수와 수수료 지급 현황	45
[그림 4- 1]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경로	34
[그림 4- 2] 최종수요 충격에 따른 생산유발계수의 추정	35

1. 연구의 개요

1. 연구 배경

-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172조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운영하는 관광 관련 기금임.
- 원래는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1972년 정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제정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한 데서 시작되었으나, 특별법에 의해 제주도는 2007년 이후 지자체 자체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운용·관리 조례’ 제2조에 의하면 기금의 조성은 특별법 제17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및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출국납부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한 기금의 용도는 크게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구분되는데, 관광안내체계 개선 및 홍보사업, 관광정보제공사업 등과 같은 보조사업과 관광숙박시설 및 국민관광시설 건설 및 개보수 등과 같은 융자사업 지원에 운용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제주지역 카지노사업의 운영악화에 따른 납부금의 감소는 물론 출연금 확보 등의 문제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확충에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음.
- 또한 관광산업의 발달로 혜택을 입는 관광사업체가 카지노사업 뿐만이 아닌 상황에서 향후에도 기금조성에 카지노 사업자만이 부담해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 특히 관광진흥기금의 혜택을 받아 사업확장과 매출신장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기금조성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관광사업체와 제주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에 따른 혜택을 입는 관련 사업체와 기관들의 참여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져가는 상황이라고 보여짐.

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운용 현황 분석을 통해 제주 지역경제에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기금 확충을 위한 신규재원 발굴 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있음.
- 이와 같은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첫째,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실적을 통한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 둘째, 관광세 관련 사례조사 분석을 통해 제주관광진흥기금의 확충을 위한 신규재원 발굴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 셋째, 제주관광진흥기금의 확충을 통한 제주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3. 연구 방법

- 국내외 문헌 연구와 자료 분석
- 관련 사례조사
- 관련 기관 및 관계자들과의 면접조사

4. 연구 구성

- 제1장은 연구의 개요 부분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및 연구의 구성을 다룸.
- 제2장은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운용 현황 분석 부분으로 관광진흥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관광진흥기금 징수 절차 및 현황에 대한 내용을 고찰하였음.
- 제3장은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외 선진 국가 및 지역에서 운용되는 관광세 관련 내용들을 조사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운용과 재원확충 관련 정책적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제4장은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부분으로 파악된 실태 자료를 중심으로 관광진흥기금이 제주지역 경제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 신규재원 발굴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함.

II. 제주관광진흥기금 현황 분석

1. 기금의 개념과 특징

- 기금은 1961년에 종전의 ‘재정법’을 대체하여 새로이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동법에서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며, 이렇게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²⁾

- 결국 기금이란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특수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하고 운용하는 특정자금이라고 볼 수 있음.
- 기금은 일괄적으로 책정하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와는 상이한 수지체계를 가짐. 또한 예산의 주요한 재원인 조세는 그 종목과 세율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기금은 재원기준이 개별 기금법의 시행령 등 법령에 의거하므로 상대적으로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징수가 가능한 특징이 있음.
- 한편 기금의 조성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익자부담의 원칙은 편익과 비용부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며 공정성을 달성한다는 장점 이외에도 일반세에 비해 국민의 부담감이 감소되므로 세입의 조달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장점이 있음.³⁾

2.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운용 현황

-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제주지역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 관련 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관광산업 발전 및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 크게는 보조사업과 사업체들의 융자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지원해 주는 융자사업의 방식으로 운용됨.

²⁾ 국가재정법, 제1장 제5조 제1항 및 제2항

³⁾ 전희석,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의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8.12, p.12에서 인용.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2009. 10. 7)

□ 기금설치 : 2006. 4월(2007년부터 운용 개시)

□ 기금조성재원 : 카지노 매출액의 1~10% 및 출국납부금 1만원이내

□ 기금의 용도

- 보조사업 : 관광안내체계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관광정보제공사업 등
- 용자사업 : 관광숙박시설 및 국민관광시설 건설 및 개보수,
관광사업체 운영 지원 등

<표 2-1>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현황(2010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월액	수 입 액				지 출 액			조성액 (누계)
		계	카지노 납부금	출 국 납부금	이자 수입	계	이자 보전	보 조 사업등	
2010	24,592	10,473	5,637	3,510	1,326	4,291	3,363	928	30,774

주) 2010년말 채권(1,088백만원)제외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과

□ 주요 지원사업

- 보조사업
 - 2007 지원 : 7개 사업, 950백만원
 - 2008 지원 : 7개 사업, 691백만원
 - 2009 지원 : 7개 사업, 787백만원
 - 2010 지원 : 8개 사업, 735백만원
 - 2011 계획 : 11개사업, 1,427백만원

<표 2-2> 제주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추이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0실적	2009실적	2008실적	2007실적
합 계	735	787	691	950
상설문화프로그램운영			0	60
문화유산해설사활동비	80	107	58	54
문화관광축제지원	75	170	170	100
컨벤션뷰로지원	300	300	300	300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35	35	30	30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100	100	70	106
관광기념품제작체험공방			-	300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	30	40	20	-
관광상품개발자금 지원	110	35	43	
우수관광안내소 포상	5			
관광객전용카지노도입 추진				
제주관광명장·명품 선정 지원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과

◦ 용자사업

- 지원규모 : 90,000백만원 (‘10년 70,000백만원)
- 상환방법 : 4년거치 5년상환(건설), 3년거치 4년상환(개보수),
2년거치 2년상환(운영), 2년거치 3년상환(기념품개발 등)
- 용자한도액
 - 건설자금 150억원, 개보수자금 80억원, 운영자금 1억~3억원
 - 카지노업 : 전년도 순수 외화획득액의 30% 이내
- 용자지원 대상 : 기존 23종 → 35종
- 용자이율 및 금융기관 협약 현황(2011년 2/4분기 기준)
 - ※ 이차보전방식으로 용자지원

<표 2-3> 제주관광진흥기금 용자사업 기준

구 분	대 여 금 리 별	신용보증서 대출	부동산담보 대출
협 약 금 리	변 동 금 리	변 동	변 동
이자차액보전	대 기 업(고정금리)	1.15%	2.1%
	중소기업 등(고정금리)	1.85%	2.8%
	휴양펜션 등(고정금리)	2.5%	3.45%
	우수관광기념품 개발 지원(고정금리)	3.0%	3.95%
용자자 부담	대 기 업(변동금리)	4.29%	4.29%
	중소기업 등(변동금리)	3.54%	3.54%
	휴양펜션 등(고정금리)	3.5%	3.5%
	우수관광기념품 개발 지원(고정금리)	3.0%	3.0%

- 주1) 수요자부담금리는 분기별 공공자금관리기금 용자계정 대출금리에서 0.75%우대하는 변동금리(2011년 2/4분기 금리 : 3.54% - 4.29%에서 0.75%우대하는 금리 적용)로, 매분기별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표하는 금리 적용
- 주2) 용자자부담 3.0~4.29%, 이차보전 1.15~3.95%(고정)
- 주3) 협약은행:11개은행(기업,농협,산업,수협,신한,제주,우리,외환,하나,국민,새마을금고)

<표 2-4> 제주관광진흥기금 용자사업 업종

구 분	종 류	용자지원 사업
합 계	35종	
기 존	23종	관광지, 관광단지, 전문·종합 휴양업, 관광식당, 자동차극장, 관광공연장, 유흥음식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광유람선,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시내순환관광업, 휴양펜션, 미술·박물관, 공연장, 면세점, 일반여행업, 외국인전용기념품판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우수관광기념품
2010년 추가	관광진흥조례 신규사업	6종 패러세일링, 스킨스쿠버 윈드서핑, 모터보트 ATV, 카트시설
	주민참여기금 대상사업	3종 유스호스텔, 관광농원, 유어장
	관광경쟁력 강화 신규 지원	3종 전세버스교체, 우수숙박시설 보수비, 국내여행업 운영자금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과

3.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부과 현황

1) 출국납부금

(1)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징수 위탁 협약서

(2) 협약 일시 및 기간

- 협약 일시 : 2009년 4월 1일
- 협약 기간 : 1년(별도의사표시가 없는 한 매1년 단위로 자동갱신)

(3) 협약 당사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한국공항공사사장

(4) 출국납부금

- 제주국제공항을 통하여 국외로 출국하는 자(1인당 1만원)

(5) 납입고지 및 납부

- 한국공항공사사장은 매월 납부금을 익월 10일까지 제주도에 제출
-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공항공사에 매 익월 20일까지 납입고지(징수)

<표 2-5> 출국납부금 징수 및 수수료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납부금 징수	3,105	2,879	3,051	3,510	
수수료 지급	171	158	168	193	납부액의 5.5% 지급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과

2) 카지노납부금

(1) 근 거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 2항

(2) 징수방법

- 카지노업체는 전년도 매출액을 3월말까지 제주도에 보고
- 제주도에서는 매출액 조사 후 4월말까지 징수분 확정
- 카지노업체는 당해연도 납부금을 4회(6월,8월,10월,12월)에 분납

(3) 징수비율

-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총매출액의 100분의 1
-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총매출액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 초과하는 경우 : 4억 6천만원+총매출액 중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표 2-6> 카지노 매출액 및 기금납부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총매출액	62,667	85,520	88,468	101,771	
기금액	3,631	5,653	5,637	6,367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과

Ⅲ. 관광세 관련 사례조사

1. 일본의 관광세

1) 골프장이용세

- 2008년 기준으로 일본의 골프장세는 총 598억엔으로 도도부현은 세 수입의 70%를 골프장이 소재한 시정촌에 교부하고, 나머지 30%를 자체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 1954년에 종래의 입장세 대상시설중 제1종시설 및 제2종시설을 국세로 이관하고 제3종시설인 부도장, 마장, 골프장에 대한 과세를 「오락시설이용세」로 존속시켰음. 1988년의 세제의 발본개혁에 의해 1989년부터는 오락시설이용세 가운데 골프장이용세 이외의 오락시설에 대해서는 과세가 폐지되고, 과세대상은 골프장이용에 한정시켜 세금의 명칭을 「골프장이용세」로 개정하였음.⁴⁾
- 골프장이용세는 도도부현에서 골프장 이용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납세의무자는 골프장 이용자임. 세금의 징수는 골프장 경영자가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받을 때 징수하여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에 납부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다만 골프장 이용자라 하더라도 18세 미만, 70세 이상, 전국체육대회 참가자, 학교 교육활동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골프장이용세를 면제해 주고 있음.
- 골프장이용세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표준세율은 1인 1일에 대해

4) 경기개발연구원,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레저세의 확대개편방안 연구, 2008.7, p.49.

800엔, 제한세율은 1,200엔(76조 1항, 2항)으로 설정하고 각 도도부현의 조례에 의해 세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도도부현에서는 골프장의 위치, 품질 등을 고려하여 여러 등급으로 구분한 후 일반적으로 최고 등급의 골프장에 대하여 최고 세율(1,200엔)을 부과하는 등의 차별을 두고 있음.

<표 3-1> 후쿠시마현의 골프장이용세 사례

등급	이용세	등급	이용세
1급	1,200엔	7급	650엔
2급	1,100엔	8급	550엔
3급	1,000엔	9급	500엔
4급	900엔	10급	400엔
5급	800엔	11급	350엔
6급	700엔		

자료 : <http://www.kipf.re.kr/info/officialTourReport>

- 또 「골프장 정비의 상황 등에 따라」 세율에 차등을 두는 것이 가능함(동조 3항). 이것은 일종의 불균일과세를 법자체가 허용한 것이지만, ① 「골프장 가운데 800엔의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홀수가 18홀 이상이어야 하고, 또한 시설의 설비 상황등이 표준적인 골프장이어야 할 것」 ②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이외의 골프장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과의 이용요금의 차이, 홀수, 시설의 정비 상황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수단계의 세율구분을 정할 것, 이 경우에 있어서도 최저의 세율은 대략 400엔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 ③ 「퍼블릭코스의 골프장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설이 동등한 정도의 멤버코스의 골프장과 비교해서 한단계정도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유의할 것」, ④셀프플레이 골

프장(셀프플레이 이외 플레이를 인정하지 않는 골프장) 가운데 ①~③에 의해 표준세율이하의 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에서 카트피 등이 캐디포함 골프장의 캐디피와 동일한 수준 또는 그 이하에 대해서는 시설의 설비상황이 동등한 골프장과 비교해 1단계 정도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유의할 것 등을 들고 있음.

2) 입탕세

- 입탕세는 광천장소재의 시정촌이 광천욕장에 있어서의 입탕에 대해 입탕객들에게 과하는 세금으로 「환경위생시설, 광천원의 보호관리 시설 및 소방시설, 그 외의 소방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정비 및 관광진흥(관광시설의 정비를 포함)을 요하는 비용에 총당」하기 위한 목적세임.(701조).
- 입탕세는 시정촌이 과세권자이며 환경위생시설, 관광시설, 소방시설 및 소방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세로, 입장료에 150엔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광천욕장의 입장객이며 과세객체는 입탕행위임.
- 세율은 1인 1일당 150엔을 표준으로 한다고 되어있다(701조 2). 「1일」은 당일치기의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숙박의 경우 1박 2일은 체제의 총시간에 관계없이 「1일」로 해서 취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되어 있음. 실제 세율의 채용상황은 1999년도에 대해서 보면 과세단체수로 약 90%는 표준의 150엔을 패용하고 있지만 최저 20엔부터 최고 210엔까지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이러한 저액의 부담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 세금인가 하면, 가히 전국적으로는 시정촌세 수입액에 비해 불과 0.11%를 차지하지 못하

지만, 개별로 보면 시정촌세 수입액의 17~18%를 차지하고 있는 곳도 있어 무시할 수만은 없음.

<표 3-2> 입탕세의 개요

구분	내 용
납세의무자	입장객
과세권자	시정촌장
과세대상	광천욕장
과세표준액 및 세율	과세표준 : 입탕일수 세율 : 1인 1일 150엔(단 1박 2일의 입탕객은 1일로 봄)
징수방법	특별징수
신고납부	조례에 정하는 때(부과기준일 : 수시)
면세점	연령 12세 미만자 공동욕장 또는 일반 공중욕장에 입탕하는 자

자료 : 일본자치성세무국 시정촌세과, 1997. 『시정촌세 개요』.

3) 숙박세

- 2002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세의 하나인 숙박세는 도쿄도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하여 숙박요금 외에 별도의 숙박세를 징수하여 세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 숙박세의 징수는 1인당 1박 요금이 1만엔 미만의 경우에는 면제되지만, 1만엔~15,000엔의 경우 1인당 1박에 100엔, 15,000엔을 초과하는 경우 1인당 1박에 200엔의 숙박세를 징수하고 있음.

4) 문화관광시설세

- 문화관광시설세(文化觀光施設稅)는 유명한 관광지를 보유한 지역에서 관광객에 의한 쓰레기와 교통정체에 대처하고, 또한 관광객을 위

한 시설정비, 관광목적물의 보존 및 관리 등의 행정수용에 대한 원
인자부담과 수익자부담을 동시에 고려해 설정된 세목이다. 이러한
성격의 지방세는 유명사찰과 문화재를 다수 보유한 교토와 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시행되었음.

<표 3-3> 문화관광시설세의 과세사례

지자체	과세객체	세율, 세액	납세 의무자	징수방법	연 수입액
이와테현 히라이즈미쵸	문화재관람, 참배	1회당 10엔	관람, 참관자	특별징수	1,041만엔
미야기현 마츠시마쵸	문화관광 및 관람	1회당 30엔			2,007만엔
토치기현 닛코마치					5,029만엔

자료 : 일본자치성세무국 시정촌세과. 1997. 『시정촌세 개요』.

- 일본에서 문화관광시설세의 출발은 1956년 교토시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관광시설세임. 이어서 1957년 나라시, 1963년 닛코시, 1971년 히라이즈미쵸, 1979년 마츠시마쵸 등의 관광지역에서 관광시설세가 도입되었음.
- 교토시에서는 1956년 도입이후, 여러번 유사한 지방세 법정외세의 도입을 시도하였고, 그 가운데 1987년 도입을 추진하던 고도보존협력세(古都保存協力稅)는 특별징수의무자인 신사와 사찰의 반대로 도중에 폐지되었음. 그후, 현재까지 문화관광시설세의 신설은 없었고, 1994년 마츠시마쵸의 폐지를 마지막으로 관광시설세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음.

5) 요트 및 모터보트세

- 요트 및 모터보트세는 선박이 있는 바다. 하천, 호수 지역에서 선박 가운데 영업외의 사적 유흥용 선박에 해당되는 요트 및 모터보트에 대해 과세하는 것임.
- 이들 선박은 반드시 육지와 접점지에 정박할 필요가 있고, 그 정박소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과 자유가동성으로 인해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세율은 선체의 길이에 따라 연액 7,000엔에서 30만엔으로 정하였다. 요트와 모터보트는 세율구분이 있고, 요트가 모터보트보다 낮은 세율로 부과됨.
- 요트 및 모터보트세는 1976년 카나가와현 미우라시에서 신설된 지방세 법정외세임. 미우라시는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이후, 수도권의 마린레저 거점으로 사적유흥용 요트 및 모터보트의 정박이 증가되어 이로 인한 쓰레기와 오물처리, 폐유로 인한 바다 오염, 어망절단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음.
- 이에 미우라시에서는 상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깨끗한 해역의 보존 및 유지, 수산업의 보호 및 정비 촉진, 요트 및 모터보트의 이용자에 의한 쓰레기 및 오물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이에 대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요트 및 모터보트세를 신설하게 된 것임. 그러나 과세대상 파악의 어려움, 납세의무자의 지역외 거주 등으로 인해 징수율이 저조하게 되었고, 게다가 과세의 공평성이 문제가 되어 1981년에 폐지되었음.⁵⁾

⁵⁾ 경기개발연구원, 전계서, p.56.

6) 유어세

- 유어세(遊漁稅)는 야마나시현의 후지산에 있는 5개 호수의 하나인 카와구치호수를 행정구역으로 가진 1정2촌에서 도입한 법정외목적세로 카와구치호수에서 낚시하는 사람에게 낚시행위에 대해 부과된 조세로, 낚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유어세를 납부하고 유어세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
- 과세근거는 1급 하천인 카와구치호수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환경미화 관련시설정비(주차장, 공중화장실, 도로정비) 등의 비용에 총당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있음. 유어세의 세율은 자치조례에 의해 유어자 1인 1일의 낚시행위에 대해 200엔의 세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중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장애인의 경우는 면제 대상임.
- 그런데 이러한 유어세를 도입한 이유는 카와구치호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파괴의 방지, 개선을 위한 재원이지만, 유어세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환경세는 아니고 광의의 의미로 본다면, 환경보전을 위한 조세정책수단으로의 조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환경대책비용을 원인자에게 그 기여정도에 따라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원인자가 낚시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데에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음. 또한 조세수입의 총당범위가 환경보전을 넘어 환경미화까지 포함하고 있어 수익자부담원칙과도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유어세는 원인자와 수익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시되었음. 여기에는 관광객을 감소시키지 않고, 낚시객의 일부 감소는 감내한다는 방침 하에 정해진 조세이기 때문임. 또한 유어세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구 2만 미만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서 정책세제로 설계된 조세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⁶⁾

7) 별장소유세

- 별장소유세(別莊所有稅)는 1975년에 고도경제성장을 거치면서 증가한 별장과 리조트맨션 등을 가진 주민등록이 없는 소유자에 대해 소유지역의 행정수요에 대응한 부담으로 도입되었음. 지금까지 해안과 온천으로 유명한 리조트지역인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에서 유일하게 도입되었지만, 다른 세목과 달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세율은 1㎡당 650엔임.
- 별장소유세의 도입근거인 별장 등이 가져오는 특별한 행정수요란 그 이용자를 위해 필요한 쓰레기수집의 환경위생 관련비용, 상하수도시설의 정비 비용, 산사태 대책, 도로정비 등의 기본적인 인프라정비 비용, 소방 방재대책비용 등을 말함.
- 이러한 비용은 별장 및 리조트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큰 행정비용이 들어가지 않지만, 그 수가 증대된 경우에는 지역의 근본적인 행정기반을 재구축 할 필요가 있어 해당지역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행정수요증대에 따른 비용에 대해 별장 등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세액을 과세(가옥과세, 고정자산세)하여 부담토록 하고, 기타 제비용은 지역주민에게 부담시킨다는 인식에서 설정되었음.
- 또한, 별장소유세는 고정자산세대장의 자료를 기초로 과세되었기 때문에 과세대상의 파악에 편리하고, 징세비용도 최소화 되고, 과세하기 용이한 조세라 할 수 있음. 최근 아타미시외에도 별장이 증가하는

⁶⁾ 경기개발연구원, 전게서, p.56-57.

지역이 많아 앞으로는 별장소유세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2. 미국의 관광세

- 미국은 2010년 3월부터 EASTA(미국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1인당 10달러의 관광세를 징수하고 수익의 50%를 국가홍보 예산에 편입하는 등 관광세 징수 사례가 늘고 있음.
- 또한 미국의 관광세 중에서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는 세목이 일본과 유사한 형태의 호텔숙박세(hotel room taxes)임. 세율은 각 주별로 상이하지만 하와이주의 경우 7.25% 등 평균 10~11% 수준임.
- 이와 같은 호텔 숙박세는 다른 조세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을 내포하고 있음. 징수가 간편하여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지역주민이 아닌 타 지역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자발적인 관광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을 방지할 수 있음.
- 그 다음으로 식품 및 음료수세(food and beverage tax)가 널리 이용되고 있는 세목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세율은 5%로 호텔숙박세에 비해 낮지만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부과된다는 특징이 있음. 이밖에도 33개 주정부가 극장 · 나이트클럽 · 스포츠센터 · 카바레 등 유흥업소를 출입할 경우 입장료에 6% 내외의 오락세(entertainment taxes)를 부과하고 있음.
- 2009년 이후 재정난을 겪고 있는 미국 주정부와 시들이 관광 관련 세금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USA투데이는 46개 주의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09년 7월 들어 하와이 네바다주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 관광 관련 세율을 인상했다고 보도했음.

- 하와이 주정부는 최근 호텔 숙박비에 부과하던 7.25%의 세율을 8.25%로 올렸으며 내년 7월 9.25%로 추가 인상하기로 했고, 네바다 주는 숙박비 세율을 3%포인트 올려 최고세율이 12%로 높아졌음. 이에 따라 라스베이거스 호텔 숙박비에 붙는 세율은 기존의 9%에서 12%로 오르게 됨.
- 이 밖에 뉴햄프셔는 숙박비와 식당에 부과하던 세율을 8%에서 9%로 올렸으며 놀이기구 사용료에 붙는 세금도 함께 인상했고, 이에 앞서 뉴욕시는 3월 호텔 세율을 14.25%로 올린 바 있음. 일부 도시에서는 자동차 대여(렌트) 수수료도 크게 올렸는데, 위스콘신주는 밀워키시의 자동차 대여 수수료를 기존 2달러에서 18달러로 올렸음.

3. 기타 국가의 관광세

1) 이탈리아

- 이탈리아는 2011년 1월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세를 징수하고 있음. 이탈리아는 2010년 7월28일 로마시의회에서 승인된 관광서비스에 대한 숙박세 도입 적용을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로마 시내에서 숙박을 하는 모든 외래관광객은 투숙호텔에 관광세를 지불해야 하고 있음.
- 1~3성급에 머무르는 투숙객은 최대 10박까지 1박당 2유로(1인 기준, 한화 3천원 정도), 4~5성급 호텔 숙박객은 1박당 3유로(1인 기준, 한화 4천500원) 가량을 호텔에 내야 하는데, 단 2세 미만의 어린이는 관광세 부과 면제대상임.

- 이탈리아는 로마에 그치지 않고 2011년 6월 8일 베네치아 시청인 Ca' Farsetti 궁전에서 베네치아 시장 Giorgio Orsoni, 베네토 지방 노동조합장의 협의 아래 관광세가 신설되는데 동의가 이루어졌음.
- 따라서 베네치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호텔, 호스텔, 민박, 게스트 하우스등에 숙박을 예약하게 될때 숙소 등급에 따라 의무적으로 1유로의 금액을 지방 세금으로 지불해야 함.
- 숙소 등급에 따라 매 1인 1박당 최대 5박기간 동안 1유로씩 지불해야 하고, 숙소 외 시설로 간주되는 B&B 민박은 2유로를 지불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베네치아 시민이거나 10세 이하의 어린이, 호스텔은 지불하지 않아도 됨.
- 또한 비수기에 속하는 11월부터 2월까지의 세금은 면제되고, 베네치아 외곽도시들에서 숙박하거나 베네치아 주변 섬에 숙소를 예약한 사람들에게는, 4-5성급의 호텔은 예외, 20%의 할인을 제공함.
- 금번 법의 제정으로 인해, 시 재정은 약 200만 유로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지만, 실재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이 불편함을 넘어 비싼 물가와 숙박비 외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 때문에 방문이 줄어들지 정확한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스위스와 프랑스

- 스위스를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는 체류세와 같은 특별 관광세를 아직도 징수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의 조세가 존재하는 이유는 관광객의 방문으로 이익을 얻는 호텔, 요식업소 등의 관광사업체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관광시설의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임. 이것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호텔을 비롯한 숙박업소 이용객에게 1인당 최

고 7프랑(약1천원)의 체류세를 부과하여 연간 1억프랑(약145억원)의 조세를 얻고 있는 파리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3) 독일

- 독일의 경우 2011년 1월 1일 부터 공항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적용 대상은 독일 내 공항(프랑크푸르트, 뮌헨, 베를린) 출발 승객에 대하여 45유로(약 7만원)의 공항세를 부과하고 있음.

4) 도미니카 공화국

- 도미니카 정부는 입국시 여행자카드 비용으로 10불을 징수하고 있으며, 일반 항공편을 통한 출국시에는 20불, 전세기를 통한 출국시에는 5달러의 출국세를 거둬들이는 동시에 부가가치세 16% 등의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 도미니카 정부는 2004년부터 도입된 관광세 신설로 인해 관광객이 줄어들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2005년 들어서도 관광객이 늘어나고 관광세 수입도 증가하는 호조를 보이고 있어, 경기 회복국면에 있는 도미니카 경제를 관광산업이 선도하고 있음.

5) 필리핀

- 필리핀은 해외로 출국하는 자국민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 대하여 항공권 좌석등급에 따른 공항세를 관광세로 징수하고 있음.
- 관광세 납부방법은 항공권을 여행사 및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할 때 납부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구매한 항공권일 경우 공항 출장사무실에서 납부하는 방법, 직접 해당 관청에 납부하는 방법 등 3가지 방법으

로 징수하고 있으며, 공항세 외에 200페소의 통과세(세관세)를 징수하고 있음.

<표 3-4> 필리핀의 공항세 형태

구분	퍼스트클래스	이코노미클래스
정규요금	2,700페소	1,620페소
어린이요금(만2세~17세)	1,350페소	810페소
만2세 미만과 경로자	400페소	300페소

자료 : 연구자 재구성.

<표 3-5> 각국의 관광관련세의 종류

국가	관광관련세의 세목
스위스, 프랑스	체제세
이탈리아	특별요양세, 숙박세(로마)
독일, 스페인	관광인제세, 공항세
불가리아, 폴란드, 폴리네시아	관광계획세
페루	소비세
멕시코	천연자원개발세, 입장세
스웨덴, 캐나다	삼림세
호주, 홍콩, 인도	입장세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입탕세(온천세)
아일랜드, 콜롬비아	관광세
일본	골프장이용세, 입탕세, 숙박세(도쿄)
미국	호텔숙박세, 관광오락세, 식음료수세
대만	오락세
싱가포르	관광진흥세
필리핀	공항세
도미니카 공화국	여행자카드세, 출국세
사이판	관광진흥세

자료 : 강원도 연구단. 1995.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조세도입방안』 .p.50 재구성.

4. 주요국의 카지노세

1) 미국

-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네바다주에 최초로 카지노를 허가하였는데, 1980년대 들어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며 카지노는 미국의 대표적 세수확보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 미국 오하이오주의 경우에는 고용창출과 실업해소라는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최근 주민투표를 통해 카지노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조세수입사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부대조건을 달고 있음.
- 카지노설치 부대조건으로 각 지역의 카지노사업자는 5천만 달러의 직업훈련투자와 2억5천만 달러의 시설투자를 하도록 조건이 부과될 예정인데, 이는 이번 카지노도입이 고용창출과 실업해소를 위한 사업임을 명분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
- 오하이오주는 육지카지노(commercial casinos)가 설치되는 13번째 주가 되는데(Colorado, Illinois, Indiana, Iowa, Louisiana, Michigan, Mississippi, Missouri, Nevada, New Jersey, Pennsylvania, South Dakota), 오하이오주에서는 지금까지 소위 사행산업 중 복권, 경마, 자선게임만 허용되었었음.
- 콜로라도,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에서는 물가에 연동하여 보정(조정)된 총 이익금의 0.25%에서 70%의 세율로 카지노세를 징수하고 있음.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주리에서는 선상카지노에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다른 주들은 단일세율을 게임 수익금에 부과하는 데 8%의 세율을 부과하는 South Dakota와 New Jersey에서 25%인 Connecticut 등 다양함.

- 카지노를 운영 중인 주중 그 규모가 큰 주 5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도박이 최초로 합법화 된 네바다 주와 두 번째로 합법화된 뉴저지주의 Atalantic City는 전통적인 실내 카지노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1990년 이후에 개장하여 수입액 3위에서 5위를 기록하고 있는 미시시피(1990), 인디애나(1993), 일리노이(1990)주는 강연안이나 선상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음.
- <표 3-6>에 나타난 것과 같이 네바다 주는 현재 274개 카지노에서 약 215,000명의 근로자가 연간 126억불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이곳에서 나오는 세금은 635백만 불에 달함.

<표 3-6> 미국의 카지노 사업내역 : 수입액 기준 상위 5개주

분류/주(State)	Nevada	New Jersey	Mississippi	Indiana	Illinois
운영중인 카지노수	274	11	27	11	9
종업원수	215,041	45,043	26,010	16,000	8,819
매출액 (백만달러)	12,622	5,219	2,570	2,577	1,924
세금 (백만달러)	1,012	509	302	834	830
주세율 (수입액기준)	최고6.25%	최고 8% (지역개발기금수익의 1.25%)	최고 8% (시·군세: 수익의 4%)	최고 20%	최고 35%
세금 사용처	교육지원, 일반회계	교육지원, 일반회계	주택, 교통, 보건, 청소년	경제개발, 지방정부	교육지원, 일반회계
카지노 형태	일반	일반	강연안	선상	선상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레저세의 확대개편방안 연구, 2008.7. p.61에서 재인용.

- 카지노 업체의 수익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법인소득세율을 보면, 가장 많은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네바다 주는 6.25%, 그 다음으로 뉴저지주와 미시시피주는 8%로 다른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보통 최고 2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일리노이 주는 수입액에 따라 최고 35%의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 그러나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주법에 정해진 법정세율보다 실효세율이 더 커 네바다 주는 7.61%, 뉴저지주 9.25%이고 선상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일리노이주는 36.36%로 나타났음. 이러한 세율에 의해서 징수되고 있는 카지노로부터 나오는 수익금은 대부분 그 사용목적이 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데 그 사용처를 보면 고등학교 이하 의무교육 지원, 지역경제개발, 지방정부지원 등으로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유적보전, 도박중독자치료 등을 위한 재원으로도 활용되고 있음.
- 네바다 주정부는 테이블 게임, 16개 이상의 슬롯머신, 슬롯머신과 테이블 게임을 동시에 운영하는 카지노 업체에 대해서 슬롯머신 한 대 당 연건 250불의 연세를 선불로 지불하게 하고, 월별로 슬롯머신 대 당 최하 20.83불에서 최고 250불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함. 또한, 슬롯머신 한 대 당 20불의 분기별 허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 슬롯머신과 달리 테이블 게임에 대해서는 게임 수에 따라 연간 면허 수수료와 분기별 허가 수수료도 차등 부과하고 있음. 15개 이하의 슬롯머신만을 운영하는 제한적 게임면허에 대해서는 슬롯머신 한 개 당 250불을 과세하고, 월별 비율에 따라 최저 20.83불에서 최고 250불의 연세와 슬롯머신 수에 따른 분기별 허가 수수료를 최저 81불에서 최고 1,815불을 부과하고 있음.
- 1990년부터 선상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일리노이 주의 Illinois

Riverbort Gambling Act에 의하면, 입장세를 전년도 이용객 수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있는데 선상 카지노 이용객 일인당 최하 2불에서 전년도 선상 이용객이 2,300,000명 이상인 경우 최고 5불까지 차별하여 부과하고 있음.⁷⁾

<표 3-7> 미국의 상업용 카지노 재정수입 현황

주	세금 및 수수료
Colorad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지노세: 총 수입액에 따라 최저 0.25%에서 20.0%까지 누진 · 슬롯 머신과 테이블 게임 장치 수수료를 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lackhawk City: 대당 \$750.00, Cripple Creek City: 대당 \$1,200.000, Central City: 대당 1,160.00.
Illinoi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장세: 전년도 이용객을 기준으로 일인당 최저 \$2.00에서 최고 \$4.00까지 차등적용 · 도박세: 총 수입액에 따라 최저 15%에서 최고 70%까지 누진(2003.7.1일 이후 시행)
India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장료: 일인당 \$3.00 · 면허수수료: 면허시 \$25,000.00. 이후 매년 면허 갱신시 \$5,000.00 · 도박세: 총 수입액에 따라 최저 5%에서 최고 20%까지 누진.
Iow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장료: 일인당 \$0.50. · 지방정부 추가수수료: \$0.50. · 입장객: 일인당 연간 면허수수료: \$5.00 · 도박세: 총 수입액에 따라 최저 5%에서 최고 20%까지 누진.
Louisiana	<p><선상카지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수수료: 면허시-카지노 선 일대당 \$50,000.00, 이후 매년 면허 갱신 시 기존 \$100,000.00에 카지노선 총 수익의 3.5% 추가. · 카지노 선 운영세(franchise tax): 연간 수익의 15% · 지방정부 추가수수료: 이용객 일인당 \$2.50. <p><일반카지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박세: 총 수입액에 따라 최고 18.5%까지 누진.
Michig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지노 도박세 : 총 수입액에 따라 최고 18.0%까지 누진(세금의 55.0%는 카지노 장이 설치되어 있는 Detroit 시, 45.0%는 주정부로 배분됨) · 자치단체 사용료(municipal service fee): 연간 최저 4백만불 혹은 수입액의 1.25%가 4백만불을 초과할 경우는 큰 금액을 납부. · 연 평가금(annual assessment): 일차연도는 \$25백만불, 이후는 소비자 물가 변동율에 따라 변동 적용.

7) 경기개발연구원, 전계서, pp.61-61에서 재인용.

<표 3-7> 미국 상업용 카지노 재정수입 현황(계속)

주	세금 및 수수료
Mississipp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박면허세(주세): 총 수입액에 따라 최고 8.0%까지 누진. · 기초자치단체 면허세: 총 수입액의 0.4%에서 최고 0.9%까지 누진. · 기초자치단체 부가세: 총 수입액의 3.2% · 테이블 게임세: 테이블 10개까지는 \$50.00에서 \$3,000.00까지 차등적용, 테이블 16개 이상 경우, 테이블 16개까지는 대당 \$500.00, 테이블 17개에서 26개까지는 초과 테이블 대 당 \$4,800.00, 27개에서 35개까지는 초과 테이블 대당 \$2,800.00, 테이블 35개 이상 초과시 초과 테이블 대당 \$100.00.
Missour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박세: 총 수입액의 20%까지 누진. · 연간 면허수수료: 이용객 일인당 \$5.00 · 입장료: 일인당 \$1.00. 지방정부 추가수수료: 이용객 일인당 \$0.50.
Neva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롯 머신인세: 연간 대당 기본 \$250.00에 월별 배분액. · 카지노 오락세: 카지노 입장료, 음식, 음료, 기념품과 같은 물품 판매의 10% · 면허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 수수료(주세): 총 수입액의 6.25% - 연간 수수료는 \$100.00에서 \$6,000.00까지. - 기초자치단체(County) 월별 수수료는 \$10.00에서 \$50.00까지. - 기타: 비제한적 게임허가와 제한적 게임허가에 따라 슬롯 머신인에 대한 면허 수수료 다양.
New Jerse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수수료: 면허시 최저 \$200,000 매 2년마다 갱신시 최저 \$100,000 · 게이밍 소득세: 총 수입액의 8%까지 누진. · 지역 재투자세(local reinvestment tax): 총 수입액의 1.25% · 슬롯머신세: 대당 연간 \$500.00. · 카지노 법인세(주세): 수입액의 9%.
South Dako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이밍세: 총 수입액의 8%까지 누진. · 테이블, 슬롯머신당 연간 \$2,000.00.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레저세의 확대개편방안 연구, 2008.7, p.63에서 재인용.

2) 호주

- 카지노가 활성화돼 있는 호주의 경우에도 모두 주세로 되어 있으며 클럽과 호텔을 구분해 각기 다른 세율의 게임세를 부과하고 있음. 호주의 카지노는 호주문화의 일부로 발전되어 왔으며, 가구당 게임소비액은 가처분 소득의 2.1%로 미국의 2배, 영국의 3배를 넘음. 호주의

카지노 허가권은 주정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카지노개발은 전통적으로 주정부가 세입을 증대시키고 대규모 지역개발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왔음. 카지노업체는 보통 그들 수입의 4~5%를 주정부에 납부하며, 그 매출액에 연방 기업세와 어떤 경우에는 지역 복지세 및 종업원 면허세를 부과하기도 함.

- 특히, 호주에서는 카지노에 사회세(Social Tax)를 신설하여 카지노의 일반 세금의 매출액의 1~2%를 내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세는 카지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됨. 사회세는 카지노 매출액의 1%를 내는 고정세이며, 시드니 카지노의 경우 2%의 사회세를 납부하고 있음. 호주의 카지노 산업으로부터 징수되는 사회세는 미화 12억 달러 정도로 추정됨.
- 카지노 매출액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06년 호주 카지노 매출액은 약 36억 1,760만 달러로 2005년보다 8.7% 증가했음. 호주 카지노 매출액은 약 36억 1,760만 달러로 호주 GDP의 0.81%를 차지함. 2006년 호주 카지노 매출액 중 순수한 게임 매출액은 29억 5,860만 달러로 전체 매출액의 79.0%를 차지했음.

<표 3-8> 호주 카지노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성장률
매출액	3,145.2	3,227.1	3,327.6	3,617.6	4.8%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레저세의 확대개편방안 연구, 2008.7. p.65에서 재인용.

3) 독일

- 독일의 카지노 역사는 200년 이상으로 일찍이 바덴바덴과 비스바덴은 18세기 중엽부터 카지노 게임이 설치된 도시임. 1820년대에는 20개의 카지노가 운영 중에 있었으나, 1850~1990년과 제2차 세계대전 동안은 모두 문을 닫았음. 현재, 14개 주에서 38개의 카지노가 운영 중에 있으며 소유권은 완전 주정부 소유로부터 개인소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 카지노업체는 매일 주정부에 세금을 납부하여야하는데, 만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없음. 1991년 DM10억 중 DM8억이 세금으로 부과될 정도로 세율(80%)은 매우 높으며, 카지노업체들은 적은 이익마진으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음.

4) 필리핀

- 1997년 카지노가 정식 허가되어 운영되었으나 매출액 보고를 중단하는 등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어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 집권 이후 PAGCOR(Philippines Amusement and Gaming Corporation)이라는 국영기업체에서 직영해오고 있음. 또한 PAGCOR은 카지노에 관련된 법규를 제정하는 한편, 수빅과 같은 특별경제개발지구에 외국인투자자에게 카지노 특허권을 부여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
- PAGCOR의 카지노 매출액은 국영기업체 중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재정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총 매출액 중 카지노 운영에

필요한 경비(전체 매출액의 25~30%)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국가 재정 및 공공사업에 사용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카지노 사업의 수익금은 도로, 학교, 병원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사용됨. 또한 시 공무원 급여, 지방학교 학생의 교과서 구입, 지방병원의 의료시설 및 약품 구입과 그밖에 지방 상수도, 에너지개발, 문화발전기금 등에 사용되고 있음.⁸⁾

5) 마카오

- 2006년 마카오의 에드먼드 호 행정장관은 시정연설을 통해 2007년도의 4억 7천만 마카오파타카(약 564억원) 규모의 대규모 감세방침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카지노세 등 탄탄한 세수입을 바탕으로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 여행세 등의 감면조치를 통해 카지노 이외의 소매와 부동산업 등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
- 1999년 말 중국에 반환된 마카오는 아시아 최대의 도박도시로 21개의 카지노가 테이블 1,925개, 슬롯머신 4,533개를 운영되고 있음. 1934년에 최초로 카지노 산업이 등장하였으며, 지난 1961년 이래 카지노장을 독점 운영해 온 마카오관광오락공사의 영업허가 시한이 2001년 말 종료되면서 카지노 시장이 개방되었음.
- 2002년에는 3개의 카지노를 신규로 허가했고, 미국의 2개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자본이 진출해 카지노산업이 경쟁체제로 돌입하면서, 라스베이거스 형태의 카지노로 성장하고 있음.
- 마카오 정부는 카지노산업, 특히 딜러는 마카오인을 고용하도록 규정

⁸⁾ 경기개발연구원, 전게서, pp.65-66.

하고 있는데, 중국 본토와 동남아 사람들의 무분별한 입국을 막기 위해 까다로운 취업비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마카오의 카지노업체들은 전체 수입의 35%를 카지노세 명목으로 마카오 정부에 납부하고 있으며, 사회발전과 문화진흥기금으로 추가로 5%를 납부하고 있는 등 마카오 세수입의 절대적임.
- 마카오 정부의 전체 세수입은 2005년 국민총생산(107억 달러)의 32.9%(35억 달러)나 차지하고, 이 가운데 카지노세 비중만 19.3% (약 21억 달러)에 달함.
- 마카오에서는 카지노수입이 지역사회 경제와 주민복지에 기여하는 바는 매우 클 수밖에 없는데 우선 카지노에서 거둬들인 세금으로 도소매, 제조, 무역 분야에서 낮은 세금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이들 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하고 있고, 의료비는 무료이며 고교 졸업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음.

<표 3-9> 마카오의 게임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달러)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매출액	2,041	2,328	2,769	3,580	5,15	5,749	7,010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레저세의 확대개편방안 연구, 2008.7. p.67에서 재인용.

5. 시사점

1) 수익자부담 원칙을 중시

- 일본의 숙박세, 입탕세, 유어세, 보트세는 물론이고 미국의 카지노세, 오락세, 마카오의 카지노세 등은 관광활동과 관련하여 혜택을 보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음. 여기에서 수익자는 관광활동의 혜택을 누리는 관광객은 물론 관련 관광사업체들의 부담을 당연시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2) 조세부담을 최소화

- 미국에서 시행하는 숙박세(요금의 평균 10%), 일본의 호텔숙박세(1인 1박당 100~200엔), 이탈리아의 숙박세(1인 1박당 1~2유로), 필리핀의 공항세, 도미니카 공화국의 출국세 등 대부분 국가들의 관광세를 살펴보면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관광요금에 추가로 부담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별도의 징수를 통한 거부감과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음.

3) 지역주민과 노약자의 부담 면제

-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고령자, 연소자, 지역주민 등과 같은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관광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해주는 차별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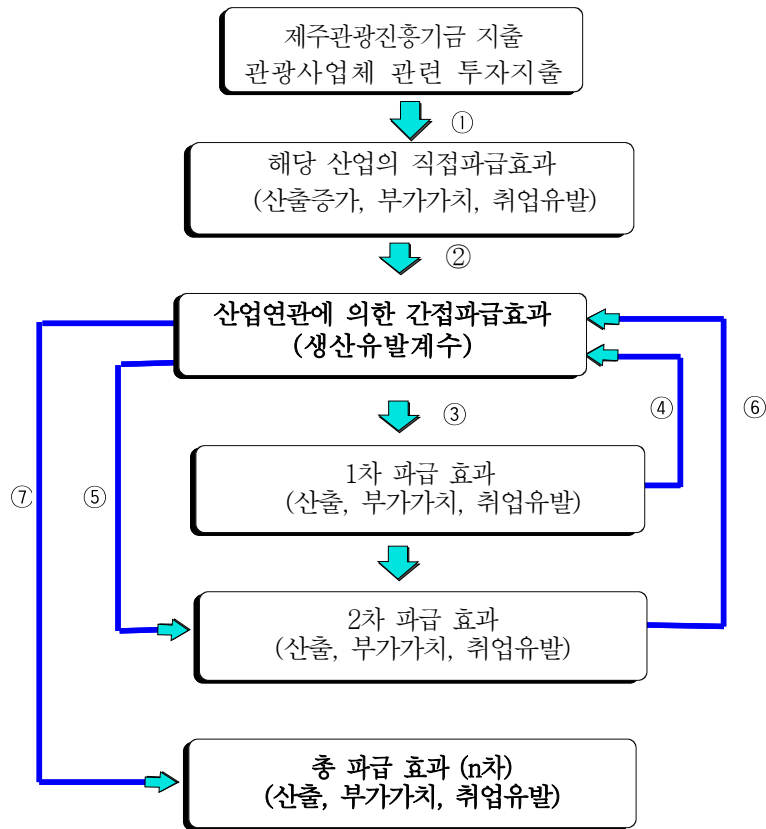
IV.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1. 파급경로 및 분석 방법

-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운용에 따른 제주지역 경제적 파급경로는 <그림 4-1>과 같음.
- 먼저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가 발생하고, 이에 상응하는 관광사업체의 투자지출이 발생하게 됨
- 이러한 소비지출은 해당산업의 직접적인 생산증가와 함께 생산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추가적인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게 됨. 즉, 재화의 생산과정에서 중간재 투입에 대한 수요 외에 노동, 자본 등 기초 투입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켜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유발시키며, 중간재 수요를 증대시켜 수입을 유발시킴
- 한편, 해당산업의 생산 증가는 이 산업이 중간재를 사용하는 산업의 생산증가를 초래하며, 이 과정에서 다시 부가가치와 고용을 유발하게 됨. 그리고 이러한 직접 및 간접적인 파급 효과는 생산활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 증가, 소비 증가의 연쇄적인 과정을 통해서도 파급됨. 즉 각 산업에 있어서의 생산 증가는 그 생산활동에 참가한 사람들의 소득을 높이고, 그 결과 소비를 증대시키며, 이 소비 증가가 다시 산업생산을 유발하는 연쇄과정으로 다른 산업에 n차까지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침
- 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지수는 지난 2009년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⁹⁾ 연구 결과를 이용하였고, 분석방법은 산

⁹⁾ 한국은행,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2009.

업간 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분석방법인 산업연관분석(또는 투입산출분석) 기법에 의해 이루어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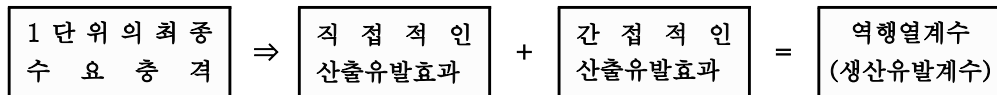


[그림 4-1]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경로

◦ 지역산업연관표에서 일연의 연립방정식체계로 역행렬을 유도하면 아래의 식과 같음.

$$\begin{aligned}
 AX + F - M &= X \\
 X - AX &= (F - M) \\
 (I - A)X &= (F - M) \\
 X &= (I - A)^{-1}(F - M)
 \end{aligned}$$

- 위에서 X는 지역산업 부문별 산출액 열「벡터」, I는 단위행렬, A는 지역투입계수행렬, F는 지역최종수요 열「벡터」, M는 지역수입 열「벡터」, 위의 (I-A)를 레온티에프 행렬이라 함. (I-A)⁻¹를 생산유발계수행렬 또는 다부문 승수라고 하는데, 역행렬(I-A)⁻¹를 (I-A)⁻¹=B=(b_{ij})n×n으로 표기하면 b_{ij}는 j부문의 최종수요 1단위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i부문의 재화 또는 용역의 직·간접 생산단위를 나타냄. 다시 말하면, 1단위 최종수요 충격(impact)에 의해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냄.



[그림 4-2] 최종수요 충격에 따른 생산유발계수의 추정

- 즉, 수식은 $Q=(I-A)^{-1} \cdot F$ 가 되며, 여기서 Q는 신규투자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며, F는 투자금액(최종수요)임¹⁰⁾.
- 지역경제에 미치는 취업유발효과는 먼저 생산유발계수행렬에 노동계수(L)의 대각행렬을 곱하여 고용유발계수행렬을 작성함. 노동계수는 제주지역의 산업별 종사자 수를 산업별 총산출액으로 나눈 것임. 노동계수는 1단위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만을 의미하지만, 고용유발계수는 생산의 파급과정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노동량을 계량적으로 나타내는 것임.

¹⁰⁾ R. E. Miller and P. D. Blair, *Input-Output Analysis: Foundations and Extensions*, Prentice-Hall, Inc., 1985, pp.333 ~ 337.

2.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 2010년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은 기금 운용에 따른 소비지출 및 관련 사업체들의 투자지출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 효과로 구분하여 이뤄졌음.
- 분석에 앞서 2010년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용자실행액과 관련 사업체의 대응 투자액을 산출한 결과 지원액 260억원, 대응 투자액 580억원 등 총 840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산업연관표에 의한 항목별 분류는 <표 4-2>와 같이 나타났음.

<표 4-1>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소비지출

(단위 : 백만원)

구분	관광진흥기금 용자실행액	관련사업체 투자액	합계
2010년 기준	26,011	58,072	84,083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과 내부자료

<표 4-2> 소비지출의 지역산업연관표 분류

	2010년 기준			
	수송장비	건설	기타	합계
기금 지원	3,401 (13.1%)	21,720 (83.5%)	890 (3.4%)	26,011 (100%)
대응 투자	4,303 (7.4)	53,769 (92.6)	- -	58,072 (100%)
합계	7,704 (9.2)	75,489 (89.7)	890 (1.1)	84,083 (100%)

자료 : 연구자가 재구성

- 2010년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이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은 직접효과(자기지역 파급효과)와 간접효과(타지역 파급효과)를 구분하고, 다시 이를 합산한 총 파급효과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분석되어졌음.
- 한편, 기금의 지역경제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2010년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1,72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74억원, 취업유발효과는 2,190명으로 나타났음.

<표 4-3>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지역경제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명)

	2010년 기준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기금 지원	53,983	20,675	501
대응 투자	118,634	46,752	1,689
합계	172,617	67,427	2,190

<표 4-4> 제주지역 주요 분야와의 파급효과 분석비교

구 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스포츠대회	2,437억원	1,274억원	-
제주관광진흥기금	1,726억원	674억원	2,190명
전지훈련	1,124억원	569억원	-

주 1) 스포츠대회, 전지훈련의 경제파급효과 결과는 2009년 기준으로 제주발전연구원, 2009 스포츠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2010. 2.에서 인용함.

주 2) 취업유발효과 비교와 관련 스포츠대회, 전지훈련의 경우는 고용유발효과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방법이 다른 이유로 단순비교가 불가능함.

V. 신규재원 발굴

1. 신규재원 발굴의 기본방향

1) 수익자부담의 원칙

- 기금조성의 기본원칙은 수익자부담 원칙이라 할 수 있음. 즉,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경우도 기금운용의 혜택과 제주관광 성장에 따른 상대적 이익을 가장 많이 얻는 기관과 사업체들의 부담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
- 여기에서 기금운용의 혜택이라 함은 융자지원을 받는 직접적인 혜택도 포함되나 관광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직접적인 자금 지원은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주관광 인프라의 확충 및 내도관광객의 증가로 더 큰 영업이익을 창출하였다면 혜택의 대상으로 보아야 함.

2) 조세저항의 최소화

- 일본과 미국, 여타 많은 선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호텔 숙박세는 다른 조세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을 내포하고 있었음. 징수가 간편하여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지역주민이 아닌 관광객들의 자발적인 관광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을 방지할 수 있음.
- 또한, 숙박세와 같은 관광세의 경우 관련 사업체들의 직접적인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체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도 수월한 장점이 있음. 다만, 관광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의 도입 방안 검토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2. 신규재원 발굴 방안

1) 내·외국인 면세점에 기금 징수

(1) 필요성

- 내도관광객의 급증에 따른 상대적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내·외국인 면세점이라 할 수 있음. 그 이유는 제주가 백화점과 같은 고급 쇼핑몰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소비 쇼핑관광은 면세점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실정이기 때문임.
-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중국인관광객의 급증에 힘입어 더욱 두드러진 매출액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데, 별도의 쇼핑인프라가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매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제주도 해외마케팅 강화로 외국인면세점 매출액 61% 증가
제주를 찾는 해외관광객이 지난 10월 16일 현재 79만여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3% 늘어난 가운데 롯데·신라 외국인면세점 2곳의 9월 한달간 매출액은 17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10억원 보다 68억원(61.8%) 늘었다.
제민일보, 2010.10.19 기사 일부인용

-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시내 내국인 면세점도 제주관광 성장의 수혜를 입는 대표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음.
- JDC의 경우 지난 2003년 약 254억원의 순이익을 거둔 이후 이익창출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0년에는 약 796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였으나 관광진흥기금에의 공헌은 전혀 없는 실정임.

- 제주관광공사의 경우는 면세점의 입지적 불리함으로 JDC 보다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지난 2009년 개장 이후 2010년에는 약 42억원의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1> JDC의 면세점 매출 및 수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매출액	100,036	116,892	153,454	181,566	195,443	232,703	270,644	302,562
순이익	25,454	32,226	46,124	53,893	55,334	71,162	74,808	79,608

<표 5-2> 제주관광공사의 면세점 매출 및 수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6월	비고
매출액	19,770	35,469	19,727	2009.3.30 개장
순이익	1,084	4,224	2,235	

- 제주도내 보세판매장(롯데와 신라 등 외국인 면세점)의 매출액은 제주세관에 공식통계에 의하면 2010년 기준으로 1,5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5-3> 제주지역 보세판매장(롯데, 신라면세점) 매출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매출액	724	696	880	1,265	1,534

자료 : 제주세관

- 특히, 이들 내·외국인면세점들은 지역상권의 일정부분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제주관광의 쇼핑인프라 확충을 위해 설치된 시설임을 감안 할 때 관광진흥기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

(2) 징수비율

- 관광진흥기금 징수비율은 보다 면밀하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시행초기에는 사업체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카지노납부금 징수비율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함.

□ 참고 : 카지노 징수비율

-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총매출액의 100분의 1
-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총매출액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 초과하는 경우 : 4억 6천만원+총매출액 중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이 경우 제주관광의 성장세를 고려할 때 JDC와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내국인 면세점과 롯데, 신라에서 운영하는 외국인 면세점 등에서 확충할 수 있는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규모는 매년 최소 6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분석됨.

<표 5-4> 면세점에서의 기금확충 예상액(2010년 매출액 기준)

구분	JDC	제주관광공사	보세판매장 (롯데, 신라)	합계
기금확충 예상액	33억 6천만원	7억 1천만원	17억 9천만원	58억 6천만원

자료 : 연구자 추정 분석

- 다만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매출액이 2010년 기준으로 총 3조 7,700 억원에 이른다는 발표를 살펴볼 때 제주지역의 매출액이 1,534억원 (0.4%)에 머문다는 것은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지만, 제주지역 면세점만의 공식 매출액을 제주세관 자료 이외에는 획득하기가 어려웠음을 밝혀두는 바임.

□ 참고 : 2010년 국내면세점 매출액

2010년 롯데면세점은 제주, 소공본점, 잠실점, 제주공항, 인천공항 등의 경로를 통해 2010년 총매출액이 2조 3,200억원에 이르고 있음.¹¹⁾

신라면세점의 경우도 2010년 총매출액이 1조 4,500억원에 이르고 있음.

(3) 향후 제도개선

- 현행 제주도특별법 제172조에 의하면 관광진흥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카지노세, 출국납부금 3가지로 한정되어 있기에 면세점에서 관광진흥기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향후 제도개선에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함.

특별법 현행 조항

제172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2. 제171조의7제3항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③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¹¹⁾ 매일경제, 2011.7.22, 기사 일부 인용

특별법 개정 조항(안)

제172조(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2. 제171조의7제3항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③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 내에서 면세 및 보세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제주자치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조항 추가)

2) 관광호텔숙박세를 통한 기금 확대

(1) 필요성

- 숙박세는 일본과 미국은 물론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관광세로 제주도는 숙박세를 관광진흥기금으로 조성하여 제주관광 인프라 확충과 제주관광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으로 활용해야 함.
- 즉, 타 국가의 숙박세와는 달리 제주지역 관광호텔숙박세는 일반 세입 예산이 아닌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조성하여 내도 내·외국인관광객들의 관광만족도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예산으로 활용함.

(2) 징수대상과 비율

- 제주지역 숙박세 도입대상은 우선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에

한정 도입하고, 향후 도내 여타 숙박업체들의 경영여건과 관광환경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감.

- 숙박세 비율은 국외 사례조사를 통해 분석해 볼 때 관광객들의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1인당 1,000원 정도 수준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외국의 경우는 10세~13세 미만인 경우만 면제되지만, 제주의 경우는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숙박세와 20인 이상 단체의 숙박세를 면제 대상으로 하여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은 제주관광 여건을 고려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필요함.

<표 5-5> 제주지역 숙박세 도입안과 타 국가 비교 분석

구 분	제주도	일본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금액	1,000원	1,500원~ 3,000원	객실료의 10~11%	3,000원 ~4,500원	300원 ~2,500원
대상	투숙객	투숙객	관광객	투숙객	투숙객
면제	지역주민 18세 미만 20인 이상 단체	1만엔 이하		10세 미만 25인 이상 단체	13세 미만 단체

자료 : 연구자 재구성

<표 5-6> 관광숙박업에서의 기금확충 예상액

구분	특급호텔	기타 관광호텔	합계
기금확충 예상액	12억 3천만원	24억 5천만원	36억 8천만원

주1) 2010년 기준 도내 180개소 11,782실의 관광숙박업체를 기준으로 산정.

주2) 특급호텔 객실가동을 평균 80%, 일반 관광호텔 60% 산정

주3) 투숙객 중 숙박세 면제 대상자는 30% 내외로 산정.

3) 부과(징수) 수수료의 인하 협상

(1) 필요성

- 제주도는 2009년 이후 출국납부금 징수를 한국공항공사에 위탁하는 협약체결을 통해 징수액의 5.5%를 수수료로 지출하고 있는데, 매년 약 2억원 정도임.
- 수수료는 한국공항공사(1%)와 항공사(4.5%)가 나누어 갖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공항이용에 따른 공항세를 징수하고 있고, 항공사들 역시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항공기 이용 증가로 이익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출국납부금 징수수료까지 챙기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됨.

<표 5-7> 출국납부금 징수와 수수료 지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납부금 징수	3,105	2,879	3,051	3,510	
수수료 지급	171	158	168	193	5.5% 지급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과

(2) 개선방안

- 제주도는 한국공항공사와의 재협약을 통해 징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적절한 수수료율은 상호간에 협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출국납부금은 항공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징수를 위해 한국공항공사나 항공사 모두 별도의 인력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최대 2% 이하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참고문헌

경기개발연구원,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레저세의 확대개편방안 연구, 2008.7.
전희석,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의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12.

제주발전연구원, 2009 스포츠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
2010.2

제주발전연구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주 개최에 따른 효과 분석, 2009
제주특별자치도, 2011 문화관광스포츠현황

한국은행, 2005년 지역산업연관표, 2009.11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10. 1. 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530호, 2009.10. 7, 제정]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의7, 제172조, 제172조의2부터 제17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주관광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기금의 조성) 제주관광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7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및 카지노사업자 납부금·출국납부금
2. 기금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등

제 3조(기금 납부 등) ① 특별법 제171조의7제3항에 따른 총매출액은 카지노 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특별법 제171조의7제3항에 따른 기금 납부금(이하 "납부금"이라 한다)의 징수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 총매출액의 100분의1
2.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총매출액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3.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4억6천만원+총매출액 중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③ 카지노 사업자는 매년 3월 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4월 말까지 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총매출액에 대하여

산출한 납부금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2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기금의 출납관리를 위한 계정에 납부할 것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금을 4회로 균등하게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회 : 해당 연도 6월 말까지
2. 제2회 : 해당 연도 8월 말까지
3. 제3회 :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4. 제4회 : 해당 연도 12월 20일까지

⑤ 카지노 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납부금을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카지노 사업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그 납부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4조(기금의 용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기금을 용자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이하 "관광진흥조례"라 한다)에 따른 관광 호텔 등 각종 관광 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2.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선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관광진흥조례 제54조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 숙박시설의 개수
5. 특별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유어장 사업의 건설, 개수 및 운전자금
6.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유스호스텔업의 건설 및 개수
7.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② 도지사는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행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기금을 용자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용자·보조사업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 사업
2. 국내외 관광안내 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 사업
3. 관광사업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4. 국민관광 진흥사업
5. 외국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6.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지원사업
 7. 국제회의의 유치·개최 및 기반조성사업
 8.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9. 관광지·관광단지안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
 10.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11. 관광사업 해외지사의 설치[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일반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제주자치도에 일반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관광협회를 포함한다)만 해당한다.]
 12. 관광사업체 운영의 활성화
 13. 관광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사업
 14.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15. 문화·체육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의 조성
 16.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 ④ 도지사는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나 투자조합에 기금을 출자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사업
 3.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 제 5조(용자계획의 수립 공고) 도지사는 매년 상·하반기에 용자대상·용자금총액·용자한도액·용자조건·용자신청 절차 등 용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 6조(용자대상자 자격) 기금의 용자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특별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특별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승인을 받은자

3. 제2호 이외의 자로서 관광지 및 관광단지내의 기반시설 또는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추진 중인 자
 4. 용자신청연도에 개보수 중이거나 개보수 예정인 관광사업자
 5. 개별법에 의하여 대상사업의 시행 승인, 지정 또는 인·허가를 받은 자
 6. 개별법에 의하여 대상사업을 등록하였거나 등록하고자 하는 자
- 제 7조(용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용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용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 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금 규모
 4. 그 밖에 기금 운용정책에 필요한 사항 등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도의회의원, 관계공무원, 사회단체회원과 특별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임직원, 금융기관 임직원 등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에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③ 간사는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 10조(위원회 위원수당)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1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 ② 도지사는 기금의 집행·평가·결산 및 여유자금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기금 전담부서는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자산의 관리 및 평가 등 기금운용정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 제 12조(민간전문가) 특별법 제172조의2제2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하며, 그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 13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4조(기금의 지출) 기금의 지출은 제4조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부수되는 경비로 하되,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해 이루어진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등의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 제 15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운용담당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기금운용 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 ②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 ③ 기금분임운용관은 기금총괄부, 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기금징수부를 작성·비치하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총괄사항과 기금지출원인행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 16조(기금계정의 설치) ① 도지사는 기금운용관으로 하여금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이하 "도 금고"라 한다)에 제주관광진흥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도록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기금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제 17조(기금 대여업무의 취급 및 승인)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기금의 대여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② 금융기관이 기금대여 업무를 취급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기금대여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18조(기금의 대여이자 등) 기금의 대여이자율과 대하이자율, 대여기간 및 연체이자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 제 19조(대여기금의 납입) ① 도 금고 및 금융기관의 장은 대여기금(전대기금을 포함한다) 및 그 이자를 수납한 때에는 즉시 이를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위반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제18조에 따른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 제 20조(기금의 수납) 납부금 또는 대여기금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때에는 이를 수납한 자는 지체 없이 그 납입서를 기금 운용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 21조(기금의 지출 및 용자한도액) ① 도지사는 기금운용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도 금고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용자대상자별 용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 ④ 도지사는 기금의 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의 지출을 제한할 수 있다.
- 제 22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 기금을 대여·용자·보조받은 자는 당초 지정된 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② 대여·용자·보조 받은 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대여·용자·보조를 취소하고 이를 환수한다.
- 제 23조(기금지출원인행위보고서 등의 작성 제출) 기금분임운용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액 보고서와 기금출납보고서를 당해 행위가 있는 월말 현재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 24조(기금대여상황 보고) 제17조에 따라 기금의 대여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여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25조(감독) 도지사는 도 금고, 협약 금융기관 및 기금사용자에 대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필요한 명령과 감독을 할 수 있다.

제 26조(준용규정) 기금의 운용, 회계관리 및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 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530호, 2009.10.7>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유효기간) 제11조제4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 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 4조(기금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개발사업 지원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기금 및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의 자산 및 채권 등 권리·의무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제주관광진흥기금에 승계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 운용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 연구진

연구책임 신 동 일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현안연구 2011-5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경제파급효과 분석 및 신규재원 발굴

발행인 || 양영오
발행일 || 2011년 10월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690-029 제주도 청사로1길 18-4번지
 전화 : (064) 726-0500 팩스 : (064) 751-2168
 홈페이지 : www.jdi.re.kr
인쇄처 || 하나CNC출판

ISBN : 978-89-6010-207-1 93320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